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채용 공고

결원(채용포기)이 발생함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수행기관에서
함께 일 할 생활지원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노인의전화재가노인돌봄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가. 모집인원 : 총 1명 (생활지원사 1명)

나. 채용분야

야	직 종	관리행정동	모집인원	자 격 요 건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비산4동, 내당2·3동, 평리2동, 평리4동	1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기타 상세 자격·우대 요건 참고

※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 지양

다. 담당업무

직종	업무내용
생활지원사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라. 자격 상세요건

	자격 상세 요건
	○ 결격사유조회 결과 범죄경력 및 노인학대전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컴퓨터 및 업무 관련 기기 사용 가능 자 우대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차량소유자 (운전가능자) 우대 ○ 타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지 않는 자(「직접일자 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 불가) ※ 기타 중복참여 제한은 ‘합동지침’에 의함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권역 내 또는 인근 거주자 우선채용

2. 근무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 : 2022. 7. 1. ~ 12. 31. 까지 (5개월)

-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말 계약연장(재계약) 가능
- ※ 단, 생활지원사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나. 계약주체 : 수행기관과 종사자 간 계약

다. 근무시간 및 보수

직종	근무시간	보수(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2022년 기준
생활지원사	주5일, 일 5시간 근무 (9:00 ~ 14:30, 휴게시간 30분 포함)	1,194,470원

라. 기 타

- 사업 개시 전 대상자 이관 및 대상자 연계 등의 업무 시 협조해야 함

3.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 발표 ⇒ 채용신체검사
⇒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없을 시 채용

나. 전형방법

- 1)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2)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전형일정

분	일 정	방 법
접수	2022. 06. 16.(화) - 채용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6. 30.(목) ~	개별공지
면접전형	2022. 6. 30.(목) ~	기관 / 개별면접 / 수시진행
최종합격자 발표	2022. 6. 30.(목) ~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채용예정일	2022. 7. 1.(금) 또는 채용시부터	

※ 전형일정 및 절차 등은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소	이메일	전화번호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56, 3층	dgnoin@hanmail.net	053) 424 - 6070

※ 우편접수 시 우편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표기할 것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에 응시분야 표기할 것

5.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지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지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
-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

6. 기타사항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다.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채용서류 반환 미청구 시 채용절차 완료 후 자동 파기함.

7. 문의

- 전화문의 : 053-424-6070